

소 장

원 고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

친권자 모 □ □ 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피 고 △ △ △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)

인지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의 생모 □□□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원고를 혼인외자로 출생하였습니다.

- 2. 피고는 원고가 출생 후 원고를 보살피며 생모 □□□와 아예 동거까지 하5호 나 원고가 ○살 때부터 원고 및 생모에 대한 태도가 변하여 아무런 도움을 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원고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원고의 생모도 또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를 인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(원고)

1.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(원고)

1.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서류 각 1부

1. 소장부본 1부

1. 송달료납부서 1부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0 0 0

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

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: 🔲 🔲 (인)

O O 가 정 법 원 귀 중

제출법원	부 또는 모의 보통재 판적소재지 가정법원	제척기간	※ 아래(1)참조 ***
원고적격	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	상 대 방	·부 또는 모 ·검 사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6조, 민법 제 863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		

※(1) 제 척 기 간

- 1.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제척기간 없음
- 2.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(민법 제864조)